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20호

나. 발 의 자 : 신복자 의원 외 33명

다. 제안일자 : 2024년 4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나.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0조제2항제7호 신설)

다.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함)의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권고를 의결¹⁾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치사항을 제시한 바 있음.
- 동 권고에서는 통합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금 예금계좌 개설·운영,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제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제도 개선 권고의 주요 지적사항 >

- 공금예금계좌 미개설(26개 지자체), 계정 미분리(9개 지자체)로 부정행위 예방 미흡
-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방치하여 이자수입 손실 초래
-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시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재정안정화 계정의 과도한 적립요건으로 인한 여유자금 적립 저해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재정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행
 - 민간위원 1/3 구성 비율 미충족 및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예치금 세부 현황 등 정보제공 미흡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사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하려는 것임²⁾.

<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및 서울시의 조치사항 >

문제점 (조치 권고사항)	서울시 현황	조치 사항
1. 공금예금계좌 미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 계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 계정별로 구분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계정, 안정화 계정 계정별 공금예금계좌 별도 개설·운영 중 	불요
2. 비효율적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관리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례상 관련 조항 없음 	안 §71
3.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요건을 엄격하게 설정 하고 있는 경우 적립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권고 조치 대상인 36개 지자체 미해당 * 조례상³⁾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정산금 제외 금액의 50% 이상으로 규정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 (적립요건, 예정액, 사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 없음 	안 §102

2)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권고에 따른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까지로 명시함.

문제점 (조치 권고사항)	서울시 현황	조치 사항
4. 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非)기금 통합 심의위원회 심의 대행 금지 -기금 관련 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재정 심의기구 대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⁴⁾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중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평가 반영 - 민간 전문가 비율 1/3 미만에 대한 행안부 기금 성과평가 감점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⁵⁾ 준수 중 (전문 민간위원 비율 58.3%, 당연직 3, 시의원 2, 민간전문가 7)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에 관해 현행 조례상 관련 조항 없음 	안§10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치금 세부현황 자료 없이 총액으로 표시되어 위원회에서 심의 현행 조례상 관련 조항 없음 	안§10③

다. 주요 조문 검토

(1)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 예치·관리 의무 명시(안 제7조제1항)

- 3)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 4)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금융상품에의 예치·관리 의무를 명시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설치하여 ----- -----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 현재 서울시는 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⁶⁾의 의견에 따라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의 경우 8개 계좌 약 896억원,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5개 계좌 6,450억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 중임.
 - 각 계정의 공금예금은 고정금리(이율 2.02)이며,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은 변동금리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이율이 적용됨.
 - 정기예금의 경우, 예치 기간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로 차등적인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특성에 따라 금리 전망과 지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운용 중임⁷⁾.

6) 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은 거시경제, 자금 운용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금융시장·실물경제 현황 진단 및 국내외 정책금리·예금금리 예측, 장·단기 포트폴리오 구성 등 기금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위촉기간: '23. 4. 28. ~ '25. 4. 27. (2년 임기)

7)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지방채 상환 일정(6월 2,100억원, 11월 2,200억원)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6개월물로 가입하여 운용 중임.

< 통합 계정의 잔액 현황 >

('24. 4. 1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기간 (개월)	신규일	만기일	이율	비고
공금 예금	1	13,960,013	-			2.02	1월, 7월 이자지급
	소 계	13,960,013					
정기 예금	1	10,000,000,000	12	2023-02-20	2024-02-20	4.45	기존 예금 예치 유지 중*
	2	10,000,000,000	12	2023-02-20	2024-02-20	4.45	
	3	10,000,000,000	12	2023-02-20	2024-02-20	4.45	
	4	10,000,000,000	12	2023-02-20	2024-02-20	4.45	
	5	10,000,000,000	12	2023-12-15	2024-12-15	4.60	월이자지급식
	6	10,000,000,000	12	2023-12-15	2024-12-15	4.60	월이자지급식
	7	10,000,000,000	12	2023-12-15	2024-12-15	4.60	월이자지급식
소 계	70,000,000,000						
MMDA (수시입 출금식 예금)	1	19,566,735,580	-				매월 이율 변동
	소 계	19,566,735,580					
합 계		89,580,695,593					

* 정기예금 만기 이후 3개월까지 가입금리 유지(신규 가입 당시의 고금리 적용)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잔액 현황 >

('24. 4. 11.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기간 (개월)	신규일	만기일	이율	비고
공금 예금	1	14,426,451,023	-			2.02	1월, 7월 이자지급
	소 계	14,426,451,023					
정기 예금	1	120,000,000,000	3	2023-12-18	2024-03-18	4.06	기존 예금 예치 유지 중*
	2	220,000,000,000	6	2023-12-26	2024-06-26	4.35	월이자지급식
	3	140,000,000,000	6	2024-03-25	2024-09-25	3.97	월이자지급식
	4	140,000,000,000	6	2024-03-25	2024-09-25	3.97	월이자지급식
	소 계	620,000,000,000					
MMDA (수시입 출금식 예금)	1	25,000,000,000	-	수시	수시	3.60	월이자지급식
	소 계	25,000,000,000					
합 계		659,426,451,023					

* 정기예금 만기 이후 3개월까지 가입금리 유지(신규 가입 당시의 고금리 적용)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8) 여유자금은 장·단기 성격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도9) 금고에 고금리 예금으로 유휴자금을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고금리의 지속세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및 시장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고금리 금융상품의 발굴 및 예치에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사항의 심의 내용 추가(안 제10조제2항제7호)

- 안 제10조제2항제7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 설>	

8) 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2023. 7. 28. 개정·시행), ‘[참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제도 개요 중 4]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여유자금 관리 부분 참조.

9) 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2022. 12. 19. 개정, 2023. 1. 1. 시행).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현재 서울시는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적립에 관한 사항(적립요건, 적립사유, 예정액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으로 이미 다루고 있음¹⁰⁾.
- 따라서 동 개정 사항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심의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 **근 거** : 기금관리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위원구성** : 12명
 - 당연직(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위촉직(9명) : 시의회 추천 2명, 재정·자금 운영 전문가 7명
- **임 기** : '23.02.28.~'25.02.27. (2년) ※ 1회 연임 가능
- **심의대상**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조성, 재원 조달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등
- **운 영**
 - 연2회 정기회 및 필요시 임시회 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금융기관 세무 예치 현황 보고 및 심의내역 관리 의무 명시(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 안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의 누락 방지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보고

10) 「2023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3. 5.) 심의자료. 이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3조 2,548억원) 중 법정 의무지출 경비(1조 3,298억원)를 공제한 잔액(1조 9,250억원)의 55.2%에 해당하는 1조 62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한 바 있음.

를 의무화하고, 기금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현재 서울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에 예치금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제공의 미비점에 대해 지난 제321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바 있음¹¹⁾.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세부적인 예치현황을 심의 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금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성동준	02-2180-8055

1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 11., p.70.